

**참고 4**

**일부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(법 제49조제3항제4호)**

**임대보증금 보증 일부가입 동의서**

임대사업자 정보	성명 (상호 및 대표자)	
	임대사업자 등록번호	
	연락처	
임대차 계약 내용	임대주택 소재지	
	임대차 계약기간	
	임대보증금	

■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임대주택은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49조 제1항에 따라 **임대보증금 전액에 대한 보증을 의무적으로 가입**하여야 합니다.

■ 다만, 같은 법 제 49조 제3항에 따라 **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** 임대주택의 담보권 설정 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에서 주택가격의 60%를 뺀 금액만 **일부 가입이 가능**합니다.

1. 근저당권이 세대별로 분리
2. 임대보증금보다 선순위인 제한물권, 압류·가압류·가처분 등을 해소할 것
3. **전세권이 설정된 경우** 또는 임차인이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**대항 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**
4. 임차인이 일부 가입에 동의한 경우

■ 일부금액 보증으로 보증에 가입한 경우, 추후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미반환 시 **임차인은 일부금액으로서 보증에 가입된 금액 한도 내에서만 보증금 청구가 가능**합니다.

1. 귀하는 위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 관련 내용을 확인하였으며, 임대주택에 대하여 **전세권을 설정하였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 요건(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) 및 확정일자를 갖추었습니까?**  예  아니오

2. 귀하는 **임대보증금의 전액이 아닌 일부 금액만\* 보증에 가입**한다는 사실에 동의하십니까?  예  아니오  
\* 일부 가입 금액 : 선순위 설정 금액 + 임대보증금 - 주택가격의 60%

3. 추후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**보증에 가입된 임대보증금의 일부금액만 보증회사에서 보상 가능함에 동의하십니까?**  예  아니오

20 . . .  
작성자 동의인(임차인) 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  
특별자치도지사  
시·군·자치구청장 귀하  
(보증회사 귀중)

\* 임차인 동의서의 유효기간은 동의를 받아야 하는 임차인의 동의를 받은 날부터 3개월로 합니다.